

2026년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'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'을 신규 모집하오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□ **공고 및 신청** :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(www.foodbiz.or.kr)

○ 공고일정 : 2026. 5. 14.(목) ~ 6. 15.(월) / 33일간

○ 신청방법 :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(<http://foodbiz.or.kr>) 접수

* 경로 : 모집공고 ▶ 2026년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(~6.15)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일체

□ **신청 자격**

○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및 식품제조업체 또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

* 국산농산물 범위 : 「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조 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

*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내 지원요건 (운영실적 및 출자금 기준)에 해당되어야 함

*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'제조업'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

* 어업회사법인, 수산물 취급 업체는 단독 지원 불가 (농업인, 생산자단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과의 원료조달, 개발·판매를 위한 계약 내용 제출 필요)

□ **신청 제외**

○ 국산 농산물 원료사용 실적 미보유 기업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,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기업

* 영업정지 처분 종료 2년 초과한 기업은 신청가능, 시정명령·제품 회수 및 판매중지,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, 향후 재발방지책 제출시 신청가능

*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등록 내역 확인

□ 지정 기준 및 절차

○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

* 단계별 평가점수 : 서류 50%(계량50, 비계량50, 100점) + 현장 50%(100점)

○ 선정 절차 : 신청서 접수 ▶ 서류 평가 ▶ 현장 평가 ▶ 평가위원회 개최

*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 대상으로 현장평가 진행

** 서류평가(50%) 및 현장평가(50%) 총점 60점 이상 업체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개최

○ 평가 일정 : 공고 및 접수(~6.15.) ▶ 서류보완(6월중) ▶ 서류평가(6월말) ▶ 현장평가(7월) ▶ 평가위원회 개최(7월) ▶ 신규지정 완료(8월)

*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농공상기업 지정 후 주요 지원내용

1) 판로확대

①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지원

- 지원 내용 : 시즌별 프로모션 참여,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등

* 현황('26년 기준) : 오아시스마켓, GS리테일, 현대홈쇼핑, 우체국쇼핑몰, 지마켓, 강원더몰, 전북생생장터, 공영홈쇼핑, 롯데ON, 남도장터, (해외)울타리몰

②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

- 지원 내용 : 농공상기업 제품 전시·홍보 지원 (부스 임차비 100%)

* '26년 : 4개국(중국, 미국, 호주, 프랑스), 13개 업체 지원

③ 국내 테마형 박람회 참가 지원

- 지원 내용 : 정책홍보관 운영 및 업체 부스 운영으로 농공상기업 우수제품 발굴 및 신규 판로개척

* '26년 : 대한민국 라면박람회(3월), 2026 푸드위크 코리아(11월 예정)

※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후 유효기간 : 2년

* 26년도 신규 지정 시 유효기간 : 2027.1.1.~2028.12.31.

※ 농공상기업 지원 사업 문의 : aT식품기업지원부 ☎ 061-931-0722

2) 금융지원

-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(융자 80% 자부담 20%)

※ 금융지원 사업문의 : aT금융법무부 ☎ 061-931-1142

※ 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(www.atbid.co.kr/atfn)

<26년도 기준>

○ 용 도

- 운영자금 : 제품 생산 관련 원료구매·저장·가공·운송 등 소요비용
- 시설자금 : 가공·저장·부대시설의 건축·확보·증설·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
(부지매입비 제외)

○ 대출금리

- 고정 : 농업경영체 연 2.5%(시설자금 연 2.0%)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
- 변동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
※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

○ 대출비율 : (운영) 20억원, (시설) 20억원

○ 대출기간 : (운영) 2년, (시설) 10년 이내(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)

○ 사업의무

- (운영)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
- (시설)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% 이상 및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의무

* 금융지원은 신청자가 많아 당해년도 지원자금이 소진되어 농공상중소기업 지정 후 차년도 1월초부터 신청가능하며, 심사를 거쳐 금융지원 가능

※ 재지정 제외시 판로확대 및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서류평가 기준(계량)

평가 항목		평가 기준	평점
국산원료 구매실적 (40)	국산 농산물 구매액 ^①	• 5백만원 이상 ~ 1천만원 미만	8
		• 1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	16
		•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24
		• 1억 원 이상 ~ 1억5천 미만	32
		• 1억5천 이상	40
※ 유리한 지표 택1	국산 농산물 구매비율 ^② (제조원가명세서 상 재료비 대비 구매액)	• 30% 이상 ~ 40% 미만	8
		• 40% 이상 ~ 50% 미만	16
		• 50% 이상 ~ 60% 미만	24
		• 60% 이상 ~ 70% 미만	32
		• 70% 이상	40
재무상태 (10)	부채비율 (업체평균 부채비율 ^③ 대비 해당업체 비율)	• 283.6% 이상	1
		• 151.3% 이상 ~ 283.6% 미만	3
		• 151.3% 미만	5
	유동비율 (업체평균 유동비율 ^④ 대비 해당업체 비율)	• 81.4% 미만	1
		• 81.4% 이상 ~ 122.1% 미만	3
• 122.1% 이상	5		
가점 (10) ※ 최대 10점 한도	인증기업	※ HACCP, 농산물우수관리인증(시설포함), 전통식품, 술품질인증, 지리적표시인증, 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 (각 1점)	
	사회적가치 창출 기업	※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 (각 1점)	
	컨설팅 수진기업	※ aT 식품 품질·위생 역량제고 컨설팅 최근 2년간 (`24년, `25년) 수진기업 (각 2점, 최대 4점)	
	계약재배 실적	※ 최근 2년간(`24, `25년) 계약재배 여부(각 1점, 최대 2점) * 약정서 및 입금내역 제출	

- ① 구매액(절대치) : 전년도 (세금)계산서, 계약재배 확인서 및 입금확인서, 자가생산 거래명세서 제출
 - ② 구매비율(상대치) : 전년도 구매액(절대치) / 제조원가명세서 상 재료비 (분자, 분모 기간 일치)
 - 재무제표 상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나 부재료의 비용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국산 원료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병행 확인
 - 국산 원료 인정범위 : 국산 신선 농·축·임산물 및 이를 단순처리한 것(단순처리란 식품 혼합 또는 식품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며 세척, 비가식부위 제거, 박피, 절단, 단순건조, 단순볶기,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성분변화가 없는 것.
단, 분쇄로 원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처리로 인정. 예) 다진마늘(o), 마늘즙(x))
 - ③ 업체평균 부채비율 산정기준 : 2024년도 농업(중소기업) 평균 부채비율 189.08%
평균 부채비율 기준으로 80% ~ 150% 범위에 대해 3점 적용
 - ④ 업체평균 유동비율 산정기준 : 2024년도 농업(중소기업) 평균 유동비율 101.72%
평균 유동비율 기준으로 80% ~ 120% 범위에 대해 3점 적용
- 출처 : 한국은행(2025.10),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, 407p A01.농업(중소기업)